

의안 번호	5
----------	---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8. 2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5호

다. 제출일자 : 2022. 08. 17.

라. 회부일자 : 2022. 08. 18.

2.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다.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
- 어린이 급식소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등)
-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마.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소재지	규모	위탁기간(최초 위탁일)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북구 장월로1마길 56	151m ²	2020. 1. 1.~2022. 12. 31. (2011. 4. 6.)

4.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1)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주요내용

- 2022년 12월 31일자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라 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위치	시설 규모	총계	국비	시비	구비	조직구성
성북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장월로 1 마길56 동덕여대	152m ²	630,000 (100%)	189,000 (30%)	220,500 (35%)	220,500 (35%)	총 : 13명 센터장 : 1명 영양기획팀장 : 1명 위생운영팀장 : 1명 팀원 : 10명

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 조례”라 함)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되어 민간위탁²⁾으로 운영 중이며, 관내 등록대상 급식소의 100%가 등록하여 관리 중임.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2.7.31.기준)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총 관리대상 시설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관내 현황	208	6,166	15	866	39	1,039	262	8,071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³⁾ 구청장은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2) 위탁현황

- 수탁기간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2020~2022.12.31.(3년) 최초 위탁일 2011.4.6.

-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4)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급식지원 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위탁기관 선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5)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6)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